

서울시립대학교 『租稅와 法』 편집·발간 규정

제정 2018. 3. 20.

개정 2024. 10. 09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와 서울시립대학교 조세재정연구소에서 공동 발간하는『租稅와 法』의 편집·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학술지의 발간) ① 『租稅와 法』은 매년 2회 발간한다.

② 『租稅와 法』의 발간일자는 매년 제1호를 6월 30일에, 제2호를 12월 31일에 발간하며,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념호 또는 특집호로 발간할 수 있다.

제3조(발간방식 등) ① 『租稅와 法』의 발간은 인쇄물 간행에 의하되, 전자출판(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포함한다)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② 『租稅와 法』에 논문의 게재를 신청한 자는 게재결정시 전자출판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
③ 게재된 논문의 저자에게는『租稅와 法』 1부와 별쇄본 10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.

제4조(발행재원) 『租稅와 法』의 편집·발행에 필요한 재원은 법학연구소와 조세재정연구소의 학술지 발간비와 게재료 및 기타 지원비로 충당한다.

제5조(게재료) ① 『租稅와 法』에 게재하기로 결정한 논문에 대하여는 소정의 게재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게재료의 금액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6조(학술지 배포) 간행된 『租稅와 法』은 교류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한다.

제7조(기타) ① 『租稅와 法』의 논문을 이용(인공지능의 학습이나 인공지능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)하려는 자는 미리 법학연구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, 허가된 목적 이외의 이용은 금지된다. <신설 2024.10.09.>

② 『租稅와 法』의 편집·발간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편집위원회 결정에 따른다.

부 칙(2018. 3. 20.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 10. 09.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10월 09일부터 시행한다.